

문 대통령 1호 공약...검찰개혁 막 올랐다

검사 25명 규모...고위공직자 대상 살아있는 권력 수사 판사·검사·경찰 고위직엔 '기소권'...공수처장 임기 3년

국회 본회의에서 30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처리되면서 내년 7월 고위공직자를 '타깃'으로 한 공수처의 간판이 오른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공수처 설치에 관한 이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의의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국무총리,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라는 목적 외에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가 된다는 점에서 검찰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칫 '육상육' 기구가 될 수 있고, 친(親) 권력 성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출범 전까지 잡음은 이어질 전망이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공수처...대통령부터 교육감까지=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범한 죄'를 수사한다. 여기서 '고위공직자'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대법원장 비서실 등의 정무직 공무원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 등도 포함된다.

특히 공수처는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의 검찰을 주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한 것 자체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무소불위 기소권' 등을 견제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수사 대상 범죄는 뇌물, 배임, 범죄은닉, 위증, 친족간 특례, 무고와 고위공직자 수사 과정에서 인정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으로 규정했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한다.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5년 이상의 인물 중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3년 단임이며 정년은 65세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는 6명으로 정했다. 추천위가 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공수처 차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0년 이상의 인물 중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3년 단임에 정년 63세로 한다.

수사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재판·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검사 출신은 수사처 검사 정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임기는 3년, 3회 연임이 가능하다. 정년은 63세다.

◇'고위공직자 범죄 인지 시 공수처 통보' 조항 논란=공수처 설치법안 제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놓고 '독소조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게 일부 야당의 주장이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조3항에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 보고,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법문이 추가돼 견제 장치가 마련됐다고 입장이다.

또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통보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수사처 규칙에 기한을 특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보완책도 마련하기도 했다.

공수처의 조직 운영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원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여야 '4+1'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 과정에서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로 바뀌었다. 애초 수정안 논의 단계에서는 공수처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결과적으로는 제외됐다.

통과된 법안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靑 "공수처, 견제와 균형 소명 완수에 최선"

"특사 정치적 고려 전혀 없어"

청와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완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 법안 통과 직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공수처 설치 법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 서야 마침내 제도에 성숙했다"며 "법안에 담긴 국민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됐다"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거사법 267명의 복권이 이뤄진 것과 관련, "2010년 사면 당시 선거사법이 2375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67명으로 10% 정도"라며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통합을 지향했고 지난 9년간 선거사법에 대한 특별사면이 없었음에도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인원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며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 성립 안 되는 경우여서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해당 안 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시점부터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한 5대 중대 범죄는 뇌물·알선수뢰·배임·횡령이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 확정 이 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 사면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과 관련,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형기를 마쳤기에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는 특별복권의 의미가 있고 그 한 명은 가석방 상태여서 특별사면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다음은 검경수사권 조정안...검경 수직→상호협력 '관계 재편' 내년 1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처리 전망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국회 처리만을 남겨놓게 됐다.

공수처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주인의 원 대표 발의)과 검찰청법 개정안(대안신당 유성업 의원 대표 발의) 등 2건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권한을 줄여 검찰과 경

찰을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도록 했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경찰의 권한을 키우는 대신 보

완책으로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안을 담았다. 검찰은 기소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했을 때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 요구권 등의 통제 장치를 갖는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 통보하도록 했다.

법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이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즉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차례대로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법안 처리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대응해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짧게 정해서 회기 하나 당 하나의 법안을 처리하는 '쪼개기식 임시국회' 전략을 구사해 내년 1월 10일께까지는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 /연합뉴스



지구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건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소중한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일, 안전한 전기사용에서 출발합니다



건물 신증축시

최근이나 비계 등이 전선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크레인 작업시

전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굴삭기 작업시

지하의 전력 케이블 매설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삿집 운반시

주변의 전선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세요



끓여진 전력선 발견시

절대 만지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

전기문의 및 고장신고는 국번없이 123